

2021년 직원채용 공고

대전광역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함께 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력을 모집합니다.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.

2021. 8. 03.

대전광역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
◎ 채용대상

담당사업	직급	인원(명)	자격기준	주요업무	기타
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(사례관리)	팀원	1명	각 호(가-다) 중 한 가지 이상 갖춘 자 가.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(졸업예정자 포함) 나.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.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※ 우대사항 : 운전가능한 자	○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관련 업무 (사례관리 및 긴급위기 가족지원)	- 근무기간 : 2021년 9월 1일~
※ 급여는 2021년 여성가족부 지침 호봉 기준 ※ <u>수습기간 3개월 적용</u> ※ 관련학과 및 관련사업 - 관련학과 : 사회복지학, 가정학, 여성학, 아동학, 청소년학, 노년학, 보육학, 교육학, 상담학, 다문화학 등. - 관련사업 : 가족관련 업무(가족상담, 가족교육, 가족문화, 다문화가족지원, 가족역량강화, 사회복지,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) 종사 경력 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사일이 연기될 수 있음.					

2. 전형방법

- 가. 1차 신청서류접수 : 2021년 8월 03일(화) ~ 8월 16일(월) 18시까지
- 나. 서류전형 결과발표 : 2021년 8월 18일(수) 10시 이후 / 센터 홈페이지 공지 (합격자 개별공지)
- 다. 2차 면접전형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 : 2021년 8월 24일(화) 10:30
- 라. 면접전형 결과발표 : 추후공지

3. 접수 및 문의

- 가. 방법 : 우편 및 이메일(dj9989@hanmail.net), 센터 방문(주말제외 17시까지)
이메일 접수시 파일명 : 입사지원_지원자성명(사업명)_제출일 (예:입사지원_홍길동(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)_20210802)
- 나. 주소 :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6로 40-17, 대전광역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- 다. 문의 : 042-932-9991, 932-9993(가족역량강화팀)

4. 제출서류

- 가.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. (필수-당 센터 양식)
- 나.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1부. (필수)
- 다. 건강가정사의 경우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 (해당자에 한함)
 -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동일교과목확인서 등
- 라.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마.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바.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5. 기타(유의사항)

- 가.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가능
- 나.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이며 접수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센터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음
- 다. 직원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 우선 채용될 수 있음

취업취약계층 범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저소득층 : 기준중위소득 60%이하※ 건강보험료 납입액(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)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○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※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※ 청년(만 29세 이하)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○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(여성가장)※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○ 고령자(만 55세 이상)○ 장애인(장애인 증명서로 확인)○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

- 라.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- 마. 채용서류의 반환은 불합격발표를 시점으로 14일 이내로 청구 가능함. (우편, 방문접수에 한함)
 -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.
- 바.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, 합격 취소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 끝.